

영등포구의회  
제17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이재형의원 대표발의】



2013. 4. 29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202호로 2013년 4월 25일 이재형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지역사회 주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 하여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(안 제1조).

나.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.(안 제2조)

- 다. 지역사회 주민 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주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사업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마. 주민안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로 주민안전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기능 및 구성·운영사항에 관한 규정을 둠.  
(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『지방자치법』 제22조

#### 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범죄예방 단체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,
  - 안 제3조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4조에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주민안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민안전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8조에 주민안전지원센터의 운영과 주민안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『지방자치법』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인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세종특별시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경찰 인력부족 등에 따른 치안 공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안전지원센터 설치 등 안전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주민 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에 이바지 하는 각종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,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.